

보 도 자 료

보도

2016. 10. 7(금) 조간부터

배포

2016. 10. 6(목)

책임자

사회안전망연구실
이태열 실장(3775-9010)

작성자

정성희 연구위원(3775-9024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총 3매

제목 : 의료법 개정 불구,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계

□ 보험연구원(원장 한기정)의 정성희 연구위원과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『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CEO Report 2016년 제5호).

□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·분석하여 표준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됨.

○ 감사원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현행 제도*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민적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함.

*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, 진료비 실태 조사, 진료비 확인 제도

○ 이에 따라 법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김춘진 의원의 법안이 수용되어 의료법을 개정하기에 이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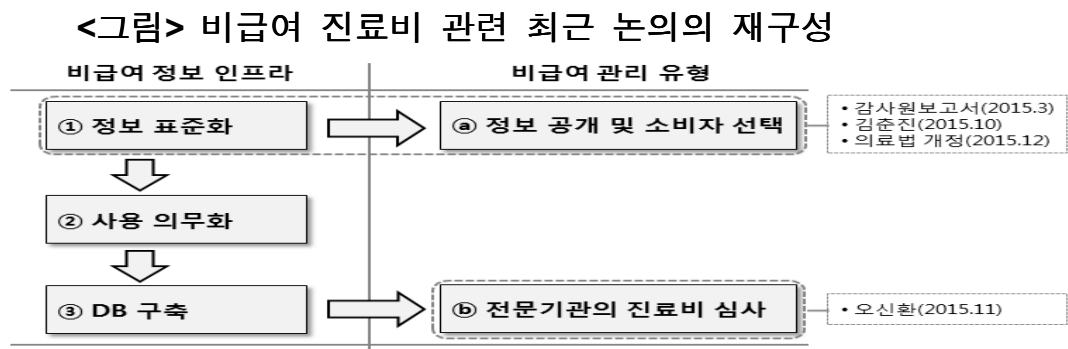
○ 이번 의료법 개정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작업을 법적으로 강제화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됨.

□ 그러나, 효과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의료이용건별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, 의료법 개정은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.

○ <그림>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급여 진료 정보를 표준화(①단계)하여, 이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사용하도록 의무화(②단

계)하고, 데이터베이스로 구축(③단계)하여야, 의료이용건별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음.

- 의료법 개정에 따른 비급여 정보 인프라의 수준은 ① 단계인 “정보 표준화”에 불과함.
- 따라서, 비급여 관리는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스스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.



□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, 보험산업 스스로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.

- (자체적인 관리기반 구축) 보험업계는 비급여와 관련한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.

* 실손보험금의 청구 서식과 정보에 대한 표준화 기준 마련 및 전문심사기관 구축

- (기존 제도 활용) 현행 진료비 확인 제도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.

* 비정상적인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 판단 기준 마련 및 진료비 확인 제도 활용, 진료비 공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및 소비자 역량 향상을 지원

첨부 : CEO Report “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”. 끝.